친생부인의 소 관계법령

[민법] 제844조(남편의 친생자의 추정)

법률 제21454호 · 2026. 3. 17. 시행

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.

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.

③ 혼인이 해소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

[민법] 제846조(자의 친생부인)

법률 제21454호 · 2026. 3. 17. 시행

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

[민법] 제847조(친생부인의 소)

법률 제21454호 · 2026. 3. 17. 시행

① 친생부인(親生否認)의 소(訴)는 부(夫) 또는 처(妻)가 다른 일방 또는 자(子)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

[민법] 제854조의2(친생부인의 허가 청구)

법률 제21454호 · 2026. 3. 17. 시행

①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(前) 남편은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,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